

제3차 한옥지원특별위원회
'15.6.17(수) 10:00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2015.6.17(수)

문화체육관광본부
(한양도성도감)

작성 자 과장 : 심말숙(☎2133-2650) 도성정책팀장 : 이사형(☎2652) 담당 : 함창모(☎2653)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 제정목적

-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서울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 한양도성의 유산가치에 대한 인식증진 및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정방향

- 유산보호를 위해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규와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보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 한양도성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한 민간지원 근거 등 마련

□ 추진경과

- '15. 2. 6 공공갈등진단 완료
- '15. 2.10 규제심사 완료
- '15. 2.11 조례 제정계획 수립
- '15. 2.12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 '15. 3. 3 부패영향평가 완료
- '15. 2.17 ~ 3. 9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기관) 의견수렴
- '15. 3.18 법제심사 완료 : 조례명 정정
- 「서울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15. 3.20 입법안 확정방침 수립
- '15. 3.2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 '15. 3.27 조례안 시의회 제출

□ 주요내용 : 총 13개조

- 안 제1조 ~ 제3조 : 조례 제정목적 및 사용용어에 대한 정의와 시장의 책무 규정

용어의 정의

- ① ‘세계유산’ :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
- ② ‘잠정목록’ :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
- ③ ‘유산구역’ :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이 점유하고 있는 구역
- ④ ‘완충구역’ : 유산의 주변 구역으로서 유산 및 유산 주변의 자연환경 및 문화적 경관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구역

- 안 제4조 : 위원회의 설치

-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설치
- 분과위원회로서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설치
- 분과위원회로서 한양도성 보존·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관계자로 구성된 한양도성 행정협의회 설치

- 안 제5조 : 현장관리·연구조직 신설

- 한양도성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연구를 위하여 현장관리·연구조직을 설치하여 일상적 보수·점검 및 안전관리 등 보존·복원 노력 강구

- 안 제6조 : 보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시장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한양도성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기본계획을 6년 마다 수립하여야 함.

○ 안 제7조 :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 한양도성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주변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산 구역과 완충구역을 둔
 - 유산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의한 문화재구역과 제27조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하고,
 - 완충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함

○ 안 제8조 : 멸실·훼손 구간 등의 관리

- 멸실·훼손된 구간에 대한 연구, 발굴, 복원 등을 통해 한양도성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
- 멸실·훼손된 한양도성 주변지역의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시계획, 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 시행

○ 안 제9조 : 민간에 대한 지원

- 시장은 민간의 한양도성 보존·관리 및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을 지원·육성할 수 있으며,
- 한양도성 주변의 역사, 문화, 마을,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음

○ 안 제10조 : 특별회계 등의 운영

-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등을 운영할 수 있음

○ 안 제12조 : 사무의 위탁

-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붙임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서울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라 함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
2. “잠정목록”이라 함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3. “유산구역”이란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이 점유하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4. “완충구역”이란 유산의 주변 구역으로서 유산 및 유산 주변의 자연환경 및 문화적 경관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 한양도성(이하 ‘한양도성’이라 한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계승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세계 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에 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한양도성 자문위원회를 둔다.

③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한양도성 보존·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관계자로 구성된 한양도성 행정협의회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현장관리·연구조직의 설치)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연구를 위하여 현장관리·연구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현장관리·연구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한양도성의 일상적 보수·점검, 안전관리 및 보존·복원
2. 한양도성의 조사연구,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한양도성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기본계획을 6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한양도성 보존·관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한양도성의 보존 및 관리
2. 한양도성의 조사연구,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

3. 한양도성의 국내·외 교류

4. 그 밖에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한양도성 주변 마을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견수렴을 위한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주변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둔다.

② 유산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의한 문화재구역과 제27조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한다.

③ 완충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한다.

제8조(멸실·훼손 구간 등의 관리)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멸실·훼손 구간에 대한 연구, 발굴, 복원 등을 통해 한양도성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멸실·훼손된 한양도성 주변지역의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시계획, 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양도성 주변의 역사, 문화, 마을,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2.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및 생활문화자원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지역의 정체성 강화 및 활력 부여를 위해 설치되는 각종 시설

4. 해당 지역의 정주권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6. 기타 주거환경 개선, 마을공동체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지원의 범위,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특별회계 등의 운영) 시장은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